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37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김도읍・구자근・이헌승

조배숙 • 장동혁 • 박성훈

김성원 · 인요한 · 김희정

조지연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3).

#### 법률 제 호

##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) ① 국가는 부처별·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계획의 수립
  - 2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의 제공 연계 및 사례관리
  - 3.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 계 구축
  - 4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
  - 5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 통계의 관리 분석
  - 6.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  - ③ 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
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·단체의 장(이하 이 조에서 "관계 기관의 장"이라 한다)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,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자격, 비용 부담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11조의3(범죄피해자 통합지원
	센터) ① 국가는 부처별・기관
	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
	<u>자에 대한 법률·경제·심리·</u>
	<u>고용·복지·금융 등의 지원업</u>
	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
	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
	(이하 "통합지원센터"라 한다)
	를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	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
	의 업무를 수행한다.
	1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
	원 계획의 수립
	2.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
	원의 제공・연계 및 사례관
	리 기가 가 가 가 가 가 가 다 다 다
	3.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
	제공하는 관계 기관・단체와
	의 협력체계 구축
	4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에 관
	한 조사・연구
	5.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관련
	<u>통계의 관리·분석</u> G 그 바에 버지피체기 통하기
	6. 그 밖에 범죄피해자 통합지

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③ 법무부장관은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를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장 또는 법인·단체의장 (이하 이 조에서 "관계 기관의장"이라 한다)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,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절차, 통합지원센터에 파견할

수 있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자격, 비용 부담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